

| 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 | 2204926      |
| 의 퇴 인  | 이인선 의원       |
| 회 답 일  | 2024. 11. 7. |
| 추 계 번호 | 24F4583      |

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## I. 재정수반요인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1  | 안 제100조의33 (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주주환원금액(주주배당 및 자사주 소각)을 증가시킨 법인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－ 주주환원성향이 직전 사업연도 시장평균의 120% 이상인 법인에 대해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</li> </ul> </li> <li>※ 주주환원성향: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환원금액 비율</li> </ul> |    |

## 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### 1. 근거 규정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      | 미첨부 근거 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안 제100조의33 (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) |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|

### 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직전연도 시장평균 주주환원성향 이상으로 주주환원금액을 증가시킨 주식시장 상장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경우, 법인세수의 감소가 예상됨(안 제100조의33 신설)
- 개정안은 직전연도 시장평균 주주환원성향 대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주주환원금액을 증가시킨 주식시장 상장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세액공제하는 특례를 신설
    - － 주주환원금액: 「상법」 및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자본시장법’)에 따른 배당 및 자사주 소각을 통해 주주가 얻은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
    - － 주주환원성향: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환원금액 비율
    - － 공제대상: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(리츠 등 투자·배당 목적의 법인 제외)

- 공제요건: ① 해당 사업연도내 「기업가치 제고 계획」을 공시  
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② 주주환원성향이 직전연도 시장평균의 120% 초과한 법인  
     ※ 주주환원성향: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환원금액 비율
- 공제율: 5%  
     ※ 공제액 = 주주환원 금액 - (당기순이익 × 직전연도 시장평균 주주환원성향 × 120%)  
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× (1 - 지배주주 등 지분비율)
- 공제한도: 주주환원금액의 1%
- 적용기한: 2027.12.31.

□ 개정안에 따른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의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주식시장 상장법인의 배당 및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금액의 규모, 시장평균 주주환원성향, 법인별 지배주주 등 지분 비율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여부 등을 추정하여야 하나,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음

○ 개정안의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법인별 배당 및 자사주소각을 포함한 주주환원금액의 규모에 대한 추정이 필요하나, 이는 법인이익 등 시장요인 뿐만 아니라 향후 시장상황 대응을 위한 이익유보 등 기업경영상의 결정과도 관련이 있어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음

- 법인 영업실적이 증가할 경우 대체로 실적결산 이후 차년도의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여력이 증가하지만, 향후 시장상황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신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이익을 유보할 경우 배당 등 주주환원 금액이 증가하지 않을 수 있음
- 이외에도 법인 영업실적의 증감과 관계없이 배당성향을 유지하거나 실적 호조에도 지배주주의 경영권 유지 등으로 배당성향을 감소시키는 등 시장상황과 관계없이 주주환원 규모가 결정되는 경우도 존재
- 참고로, 2020년 이후 유가증권 시장의 현금배당 및 자사주 소각 규모는 다음과 같음

[표 1] 현금배당 및 자사주 소각 규모 추이: 유가증권 시장(KOSPI) 기준

(단위: 조원)

| 연도     | 2020 | 2021 | 2022 | 2023 |
|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현금배당   | 33.2 | 28.6 | 26.6 | 27.5 |
| 자사주 소각 | 1.1  | 2.4  | 2.9  | 4.5  |
| 합계     | 34.3 | 31.0 | 29.5 | 32.0 |

자료: 한국거래소(현금배당) 및 금융감독원(자사주 소각)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또한, 시장평균 주주환원성향의 경우 경기국면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인한 이익실적의 변화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음
  - 시장의 평균 주주환원성향을 추정하기 위해 필요한 법인별 당기순이익에 대한 예측은 전체적인 시장 상황의 예측 외에도 개별 기업의 내재적인 요인으로 결정됨에 따라 추정할 수 없음
  - 법인별 주주환원 금액 규모의 예측 또한 시장요인과 기업 경영상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되므로 예측할 수 없음
- 또한, 법인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는 2024년 도입되어 충분한 자료가 축적되지 않아 향후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하는 법인의 수 등을 현 시점에서 추계할 수 없음

### 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### Ⅳ. 작성자

□ 성명

|         |     |     |
|---------|-----|-----|
| 국회예산정책처 | 분석관 | 과장  |
| 세제분석2과  | 박정환 | 백경엽 |

□ 대표연락처

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성명  | 전화번호         | 이메일 주소                  |
| 박정환 | 02-6788-4835 | jhpark83@assembly.go.kr |